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1. 24(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교통정책총괄과	담 당 자	·과장 박지홍, 사무관 조숙현 ·☎ (044) 201-3804, 3791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머니투데이 “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… 집주인 패싱법 논란” 기사 관련

<보도내용('20.11.24, 머니투데이)>

◈ 집주인 동의 필요없고 보상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, 재산권 침해 우려

◈ “내 집 아래 GTX 뚫려도 모른다니…” 재건축 단지 강력 반발할 듯

□ 현재, 도심부 지하로 교통시설이 지나가는 경우, 토지 소유자에게 **보상비는 매우 적게 지급되는 반면,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·건물의 가격하락이 크게 발생**하여 **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**과 함께 **안전·환경과 관련된 우려**가 많은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따라,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「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대심도 특별법’)에서는 대심도*(깊은 지하)에 도로, 철도 등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경우,

*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

○ 토지 소유자에 **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, 토지 소유자 등기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**하고,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**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**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□ 참고로, 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로, 철도 관련 법률,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**주민공람,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노선(도시계획선)이 확정**되게 되는 것으로,

○ 이러한 도로, 철도가 특정 토지 아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**『토지이용계획 확인원』**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, 토지 소유자 모르게 교통시설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.

□ 아울러, **대심도 특별법은** 대심도 도로, 철도의 노선 확정 이후 토지의 보상 및 구분 지상권 설정 여부, 건설시의 환경·안전성 강화 등을 다루는 법률로서, **교통시설의 노선결정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주는 법률이 아닙니다.**

□ 대심도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의 "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" 또는 "무보상 및 구분지상권 미설정" 등 **재산권 관련 사항은 국회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**되며,

○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조숙현사무관(☎ 044-201-37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